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정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425
----------	------

발의년월일 : 2020년 4월 3일
발 의 자 : 이정인, 김소양, 고병국,
노승재, 김제리, 박상구,
조상호, 채유미, 김평남,
이영실, 문장길, 이병도,
이광성, 김동식, 김화숙,
김용연, 봉양순, 홍성룡,
김상진, 김혜련 의원(20명)

1. 제안이유

-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으로 인해 지역거점 대형병원에서 발생하는 응급실과밀화는 중증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우리 사회 응급의료체계에서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 일반적으로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에 대하여 비판적인 여론이 있으나 야간이나 휴일에 접근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한정적이거나 거의 없는 상황에서 경증환자라 하더라도 응급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음.
- 주요 선진국에서는 야간진료 클리닉 운영이나 응급실의 단계구분 등을 통해 알맞은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체계는 거의 없는 상황임.
- 또한 지역사회 의료기관이 야간진료를 하고자 하더라도 환자의 부족,

낮은 응급의료수가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 야간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통해 응급의료나 경증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는 어려운 현실임.

-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민이 야간이나 휴일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결국 대형병원의 응급실로 귀결된다 할 것임. 이에 응급실과밀화 현상은 서울시민에게 중대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중증환자뿐 아니라 경증환자에게도 건강상의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서울시는 야간이나 휴일에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수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통해 응급실과밀화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일차의료를 활성화 하고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추진과정에서 관련 조례의 미비 등으로 인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낮아 지역사회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가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이에 현재 서울시가 하고 있는 야간·휴일 응급의료기관 운영사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이 함께 참여하여 수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시민이 야간이나 휴일에도 낮은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줄이는 응급의료체계의 개선과 시민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동 조례안을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정의규정을 마련하여 조례의 간명성을 높임.(안 제2조)

나. 야간·휴일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다.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 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 마. 시행계획의 적절성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 바. 보조금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 (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의료법」, 「약사법」, 「보건의료기본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간·휴일에 발생하는 일차의료의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의 접근성 향상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이란 19시부터 익일 6시까지를 말한다.
2. “휴일”이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3. “일차의료”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보건 의료기관을 말한다.
4. “일차의료서비스”란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건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5.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이란 다음 각목에 따른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과 약국을 말한다.
 - 가.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이란 서울시에 개설·등록된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운영되도록 시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 나. “공공 야간·휴일 약국”이란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으로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운영되도록 시장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을 통하여 야간·휴일에 일차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정 등) ① 시장은 야간·휴일에 발생하는 일차의료의 제공을 위해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기관의 의무)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지정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망 구축) 시장은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 수집과 관리,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 기본계획 심의
2.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2. 의료기관 및 약국을 대표하는 사람
3.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관계있는 사람
4.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 담당부서의 장
5. 일차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

③ 위원의 위촉 및 위원회의 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보조금관리) 보조금 관리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조례 시행이전에 시장이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으로 지정한 의료기관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지정 등)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비용, 제6조(정보망 구축)에 따른 정보망 구축 및 운영비용,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와 제8조(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위원회 운영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시 지정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비용
- 시 지정 야간·휴일 일차의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비용
- 시 지정 야간·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위원회 운영비용

나. 전제

- 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물가상승률은 반영하지 않음

다. 추계기간 : 5년

라. 방법

- 서울시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 운영’ 사업이 현재도 추진중이나 본 조례안은 그 운영 시간을 늘리는 것이므로 진료시간 확대에 따른 추가 지원비용 산출

※ 서울시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 사업 및 조례제정안 상 운영시간 비교

구 분	서울시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 사업	제정조례안	비 고
평일 야간	19:00~22:00 또는 23:00	19:00~익일 06:00	8시간(7시간) 증가
토요일	15:00~18:00	15:00~24:00	6시간 증가
공휴일	09:00~18:00	24시간(단, 휴일 전일이 평일인 경우 06:00~ 24:00)	15시간 증가
' 20년 예산액	25억원	-	

- 본 조례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현재 운영중인 야간·휴일 지정 진료기관 44개 중 병원급을 제외한 의원급 34개만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나, 진료희망자는 증감에 영향받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지원방식은 기존과 동일한 진료건수 당 정액 지원방식으로 하되 지원단가는 평일단가(22:00~23:00)인 의료기관 9,000원, 약국 1,500원으로 가정하여 진료대상자 1인당 총 10,500원으로 지원단가 산출
 - 단, 2018년 서울시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 운영’ 사업 추진실적으로 볼 때 동대문구의 실적이 도봉구의 37배임. 지역편차와 야간운영에 따른 병원 운영비 증가분(최소 의사, 간호사, 약사 각 1명 이상의 인력 필요) 보전 등을 고려한 인건비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원방식에 따라 평균인건비의 25%지원시 연간 2,244,000천원, 50%지원시 연간 4,488,000천원 추가소요 가능(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 연구보고서(2018.4)에 따르면 전국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인의 월평균 임금 추정액은 2016년 기준으로 의사의 경우 1천3백만원, 약사는 6백만원, 간호사는 3백만원임)

※ 서울시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 사업 1건당 지원금액 상세(2019년 기준)

구 분	운영시간	의료기관	약국
평일 야간	19:00~22:00	6,000	1,000
	22:00~23:00	9,000	1,500
토요일	15:00~18:00	6,000	1,000
공휴일	09:00~18:00	6,000	1,000

- 진료시간을 본 조례안과 같이 확대시 증가되는 진료환자 수는 추정이 곤란하나 기존사업과 유사한 수준의 진료희망자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410,737명으로 진료환자 수 추정(2018년 기준 의료기관과 약국을 합친 사업실적은 840,945명이나 이중 진료환자 수는 410,737명)

-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망 구축과 관련하여 서울시에 유사 기능을 가진 시스템은 없으나, 서울시에서 구축하여 운영하는 시스템 참고하여 구축비용을 산출하였고(140,000천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가이드(2019, 2차 개정)」에 따라 SW개발비 기준 용역유지관리 요율(10~15%)을 참고하여 유지보수 비용 산출(연간 21,000천원)

※ 2019년 서울시 예산서 :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돌봄포털서비스 구축 140,576천원

-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위원회는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그중 참석수당 지급대상은 9명이며 연6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위원회 운영비용 산출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합계) ≙ 21,837,195천원(연평균 4,367,439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세입	-	-	-	-	-
	소계(a)	-	-	-	-	-	-
세출	시 지정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비용(안 제4조)	4,312,739	4,312,739	4,312,739	4,312,739	4,312,739	21,563,695
	시 지정 야간·휴일 일차의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비용(안 제6조)	140,000	21,000	21,000	21,000	21,000	224,000
	시 지정 야간·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위원회 운영비용(안 제 7조, 8조)	9,900	9,900	9,900	9,900	9,900	49,500
	소계(b)	4,462,639	4,343,639	4,343,639	4,343,639	4,343,639	21,837,195
□ 총 비용(b-a)		4,462,639	4,343,639	4,343,639	4,343,639	4,343,639	21,837,195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주 무 관 채소영

☎ 02-2180-7942

e-mail : liz1998@seoul.go.kr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시 지정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비용
- 시 지정 야간·휴일 일차의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비용
- 시 지정 야간·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위원회 운영비용

2. 세부추계내역

- 시 지정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비용 ≙ 21,563,695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 시 지정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비용)_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 연간 시 지정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비용

= 지원인원 수 × 지원단가

= 410,737명 × 10,500원

= 4,312,739천원

= 4,312,739천원

- 시 지정 야간·휴일 일차의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비용 ≙ 224,000천원

- 시 지정 야간·휴일 일차의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비용

= 구축비용(1년차) + 운영비용(유지보수관리 등 2~5년차)

= (140,000천원×1식) + (21,000천원×4년)

= 224,000천원

- 시 지정 야간·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위원회 운영비용 ≙ 49,5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 시 지정 야간·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위원회 운영비용)_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

- 연간 시 지정 야간·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위원회 운영비용

= (참석수당×수당지급 참석인원×개최건수)+(업무추진경비×참석인원×개최건수)

= (150,000원×9명×6회)+(30,000원×10명×6회)

= 9,900천원